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5월 19일  
도시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2020 - 44
- 나. 제안자: 김성한 의원 외 8명
- 다. 제안일자: 2020년 5월 8일
- 라. 회부일자: 2020년 5월 13일
- 마. 상정일자: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  
(2020.5.19.)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성한 의원)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위탁대상자 및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준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번호 변경에 따른 정비  
(안 제3조제1항)
- 나. 행정내부지침으로 규정해야 할 조항 삭제(안 제6조)
- 다.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8조)
- 라.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 조항 정비  
(안 제13조제3항)
- 마. 상위법에 규정된 위원회 심의사항 삭제(안 제19조)
- 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안 제2조~제5조, 제7조~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22조의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2020. 5. 8. ~ 5. 12.) 결과: 의견 없음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광희)

### 가. 개정 취지

- 도로명주소시설 위탁대상자의 범위 개정 등 상위법령보다 축소하여 규정한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거나 불필요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개정 내용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번호 변경 (안 제3조제1항)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건물번호판 교부 대장 서식)
- 행정내부의 업무지침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6조)
  - 도로명주소 관련사항 변동 시 부서 간 통지조항 삭제
-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 범위 정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비고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현행과 같음)	조례에서 규정한 위탁대상자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현행과 같음)	조례에서 규정한 위탁대상자
(신설)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지점번호 검증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탁대상자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안 제13조제3항)
  - 광고사업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의 제작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상위법에 규정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사항 삭제(안 제19조)
  -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제4항에 규정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사항의 조례 재규정 조항 삭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안 제2조~제5조, 제7조~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부과된 광고사업자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제1항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번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 서식 번호를 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도로·건축물 등 도로명주소 관련사항 변동 시 부서 간 통지는 행정내부 업무처리에 관한 것으로 행정 내부 지침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 **안 제8조**는 도로명주소시설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보다 축소하여 규정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는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위탁대상자의 범위에 조례로 정하는 자만을 규정하여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에게는 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축소 규정하였던 것을
  - 위탁대상자는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개정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3조제3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것으로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sup>1)</sup>
  - 광고사업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의 제작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안 제19조**는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제4항에 규정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사항의 조례 재규정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에는,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임<sup>2)</sup>
-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명주소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6. 토론요지: 생략**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2) 법제처 의견제시 12-0179

##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②·③ 생략

④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